



# 電氣關係

## 大法院 判例와 所見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n the Related Electric and Its Views

朴 鍾 福

辯護士

### 1. 판결요지

전기공사업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같은 법 제8조 제3호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면허를 받은 후 그 전의 위반행위로 벌금에 처형되더라도 면허가 당연히 무효 또는 실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을 뿐이다(1989. 4. 11. 88누 3000 전기공사업 면허 취소처분 취소).

### 2. 참조 조문

전기공사업법 제 8조 (공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 제 3호 내지 제 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에 제 1호 내지 제 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기공사업법 제 31조 (공사업의 면허의 취소)  
동력자원부장관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공사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호 내지 9호 : 생략

10호 :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때.

### 3. 사건개요

이 사건의 원고인 한○○는 1986. 9. 1. 피고인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전기공사업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아 충주시에 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원고가 위 면허를 받기전인 1986. 5. 15 소외 ○○○으로부터 착공금 지급 약정하에 전기공사업 면허를 대여받아 충주시 교현동 등 2개소에서 각 무면

허공사를 시행하고 위 ○○○에게 착공금 1합계 금 60,000원을 지급하였던 사실로 청주지방법원 청주지원으로부터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소한 사건

#### 4. 문제의 소재

전기공사업법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바와 같은 공사업자 면허 발급전의 같은 법 위반행위가 위 면허 후에 벌금에 처형된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공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 8조 제 3호를 적용하여 면허가 당연히 무효 또는 실효가 된다고 볼 수 있는지, 만약 그렇게 볼 수 없다면 피고로서는 면허처분 후의 그러한 사실관계의 변경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

#### 5. 고등법원 판결

위 사건을 처음 심리한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전기공사업법 제 31조 본문 및 그 10호는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면허를 받기 전의 같은 법 위반사실로 말미암아 면허를 받은 후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이 전기공사업법 제 8조 본문 및 2, 3호 규정에 의하여 위 면허가 당연히 무효라거나 또는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피고로서는 그러한 사실관계의 변경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난 다음 그러나 위와 같은 처분 후의 사실관계의 변경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행정행위가 일단 성립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질서가 형성되고 특히 허가, 면허, 특허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을 생기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취소는 항상 국민의 기득권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기

성의 법률질서 유지와 상대방의 권익보호라는 견지에서 취소권자가 취소원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취소할 수는 없고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그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의 위 무면허 전기공사로 전기 수용가에게 특별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위 전기공사업법 위반사실이 있는 후인 1986. 9. 1 점포임대보증금과 공구 구입비, 운영자금 등으로 금 12,600,000원 가량을 투자하여 전기공사업법 소정의 면허기준을 갖추어 피고로부터 제 2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후 더 이상의 같은 법 위반사실 없이 성실히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들을 고려하면, 무면허 전기공사를 예방함으로써 부실전기공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상의 필요를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면허를 받기전에 저지른 그 사안이 그다지 무겁지 아니한 같은 법 위반사실을 이유로 그 후 면허를 받아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여 온 원고에 대하여 이제와서 그 면허를 취소함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 2종 전기공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1988. 1. 28 선고 87구857 판결).

#### 6. 대법원 판결

대법원도 전기공사업법 제 8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공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면허를 받은 후 면허전의 위반행위로 벌금에 처형되었다고 하여 면허가 당연히 무효라거나 실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 또

는 철회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고,

행정처분의 재량권 남용여부는 공익의 원칙,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공익상 필요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원심이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무면허 전기공사를 예방함으로써 부실공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의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여 그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7. 맺음말

행정행위의 취소(강학상 철회에 해당함)는 행정법상 가장 무거운 제재수단이므로 취소권자가 취소원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취소할 수 없고 그것보다 더 낮은 제재수단이 있으면 그 수단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 취소할 경우에도 취소에 의하여 달성될 법률적합성이나 행정목적의 실현과 같은 공익과 그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보다 큰 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요구되는 때에 한하여야 한다고 볼 때, 위 사건에서 원고의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위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朴鍾福 변호사 사무실 536-4418>

### 原子力消息

## 靈光原電 세탁부 病勢는 放射線과 무관

지난 8. 28 KBS TV등 일부 언론을 통하여 영광원전의 청소용역회사에 소속되어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작업복 세탁업무를 담당했던 김 모씨(56세)가 지난해 9월부터 하반신 마비, 전신피로와 무력증 등의 증세로 1년여 동안 앓아 오던중 현재 상태가 악화되어 생명이 위독하며 발병원인은 원전의 방사선 영향이라는 김씨 가족의 주장이 보도되었다.

그러나 김씨가 86. 3. 11~90. 4. 9까지 약 4년간 영광원전에 근무하면서 받은 방사선량은 총 545밀리렘으로, 이는 병원에서 X선 위투시(胃透視) 1회 촬영시 받는 방사선량보다 적은 수준이며 또한 김씨의 연평균 방사선량 136밀리렘은 작업자의 연간 법적허용선량 5,000밀리렘에 훨씬 미달됨은 물론 세계 평균 자연방사선량 240밀리렘보다도 적은 양이다.

### 지병이 원인으로 추정, 정밀검진 추진중

그동안 김씨의 고용업체인 청소용역회사가 전남대학병원과 영광종합병원에 의뢰한 바 있는 정밀검진 결과에 의하면 김 모씨는 간(肝)내 담도(膽道)에서 돌이 발견되었으며 요추의 추간판 및 비만성 뇌위축 증상 등을 보이고 있다.

또한 김씨는 지난 '86년 이래 당뇨질환, 순환기질환 및 고혈압 등의 지병을 앓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김씨의 병세는 방사선과는 무관한 김씨의 지병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김씨가 근무했던 청소용역회사에서는 김씨에 대한 보다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국내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추가 정밀검진을 추진하고 있다.